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상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12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23.

발 의 자 : 이상식 · 채현일 · 모경중
양부남 · 임호선 · 황운하
복기왕 · 신정훈 · 이정문
정춘생 · 권칠승 · 박지혜
부승찬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관이 사건이나 당사자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에서 배제되는 제척(除斥)제도를 두고 있음.

그러나 실질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단계의 검사 및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내부 지침이나 규정만 존재할 뿐, 법률상 명확한 제척 규정이 미비하여 수사권 남용 및 편파 수사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법관에 준하는 제척 사유와 기피·회피 절차를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, 수사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197조의5 및 제197조의6).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7조의5 및 제197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7조의5(수사기관 종사자의 제척) 수사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.

1.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해자인 때
2.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
3.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, 후견감독인인 때
4. 수사기관 종사자가 사건에 관하여 증인, 감정인,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
5. 수사기관 종사자가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의 대리인, 변호인, 보조인으로 된 때
6. 수사기관 종사자가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의 변호인이거나 피의자·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, 법무법인(유한), 법무조합, 법률사무소, 「외국법자문사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서

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

7.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의자인 법인·기관·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

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

8. 그 밖에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객관적·구체적 사유가
있는 경우

제197조의6(수사기관 종사자의 기피 및 회피) ① 피의자, 피해자 또는
그 대리인은 수사기관 종사자에게 제197조의5의 사유가 있거나 수
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소속
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.

② 수사기관 종사자는 제197조의5 각 호의 사유 또는 제1항의 사유
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직무집행을
회피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97조의5(수사기관 종사자의 제척)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.</u> <u>1.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해자인 때</u> <u>2.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</u> <u>3.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, 후견감독인인 때</u> <u>4. 수사기관 종사자가 사건에 관하여 증인, 감정인,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</u> <u>5. 수사기관 종사자가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의 대리인, 변호인, 보조인으로 된 때</u> <u>6. 수사기관 종사자가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의 변호인이거나 피의자·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, 법무법인(유한),</u>

법무조합, 법률사무소, 「외국
법자문사법」 제2조제9호에
따른 합작법무법인에서 퇴직
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
한 때

7.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의자인
법인·기관·단체에서 임원
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
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

8. 그 밖에 공정성을 의심받을
염려가 있는 객관적·구체적
사유가 있는 경우

제197조의6(수사기관 종사자의 기
피 및 회피) ① 피의자, 피해자
또는 그 대리인은 수사기관 종
사자에게 제197조의5의 사유가
있거나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하
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
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기피를
신청할 수 있다.

② 수사기관 종사자는 제197조
의5 각 호의 사유 또는 제1항의
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
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직
무집행을 회피하여야 한다.